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6월 29일, 박성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법안심사제1소위(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박성민 의원)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

자의 동의를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제5조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도 친족,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

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수급자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급여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최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권유를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생활고가 지속되면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지원대상자에게 여러 차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권유하였음에도 지원대상자가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생계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는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급여 수급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급자가 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차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의 직권 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장기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의 가구 상황, 소득·재산, 부양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여야 하는데, 지원대상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의 실질적 제약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

개정안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이 필요함에도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직권신청이 어려워 지원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 신청을 간주하더라도 이후 수급자격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와의 접촉 및 의사 확인 절차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제

도의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공공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